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5가단534456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변론 종결2017. 3. 23.(피고 A, B, D, F, G, H에 대하여)

2017. 5. 25.(피고 C, I에 대하여)

2017. 6. 22.(피고 E에 대하여)

판결 선고2017. 7. 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6,922,870원과 그중 46,813,050원에 대하여 2011. 1. 8.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6. 5. 5.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 D, E, F, G, H 및 I은 피고 A과 각자 위 가.항 기재 돈 중 46,813,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8.부터 2016. 5. 5.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D, E, F, G, H 및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기재 및 피고 C는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돈 중 46,813,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업무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으로서 2008. 9. 25.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4410만 원, 보증기한을 2010. 9. 25.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서, 피고 A에게 원고 명의의

주택신용보증서(갑 제2호증)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의 납부와 보증료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같은 법 시행령, 원고의 운영규정 및 보증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르고, 원고가 피고 A을 대위하여 농협중앙회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A은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원고 소정의 물에 의한 손해금, ②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이에 대한 원고 소정의 물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2) 농협중앙회는 같은 날 위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피고 A에게 변제기한을 2010. 9. 25.로 정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 4900만 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이라고 한다).

3) 피고 A은 2010. 1. 18. 이자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2011. 1. 7. 농협중앙회에 대출원리금 합계 46,813,05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피고 A은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액 4410만 원에 대하여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인 2010. 9. 28.부터 위 대위변제 전날인 2011. 1. 6.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인 연 0.9%의 비율에 의한 109,820원(= 4410만 × 0.9% × 101/365,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 이하 버림)의 위약금이 발생하였다.

5)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1. 1. 8.부터 2012. 11. 30.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인정근거] 피고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위약금 합계 46,922,870원(= 46,813,050 + 109,820)과 그중 대위변제금 46,813,050원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1. 1. 8.부터 2012. 11. 30.까지는 약정 손해금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6. 5. 5.까지는 같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 D, E, F, G, H 및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D는 의정부시 J오피스텔 702호에서 'K'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 E, F, G 및 H는 위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으며, 피고 I은 웹 디자이너이었다.

2) 사기 범행(이하 '이 사건 사기 범행'이라고 한다) 가) 피고 B, D, E, F, G, H 및 I과 주식회사 L의 대표자인 M, 주식회사 N의 대표자인 O(2015. 12. 17. 사망)은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자가 기혼자이며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세계약서 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위조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 중 약 40%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 D는 주민등록본, 재직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하고 대출신청자들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상담을 하는 일을, 피고 E, F은 대출신청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서류를 건네주면서 은행에서 대출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을, 피고 H는 대출신청자들의 정보를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은행에서 대출신청 서류의 기재 내용에 대한 확인 전화가 올 경우 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통화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 I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컴퓨터를 통하여 만들어 주고, M, O은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한 자들에게 자신들의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만들도록 허락한 후 일정 금원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 A은 인터넷에 게재된 대출광고를 보고 K에 연락하여 피고 D 등으로부터 위조된 재직증명서(갑 제6호증의 1), 임대차계약서(갑 제6호증의 2),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갑 제6호증의 3), 주민등록등본(갑 제6호증의 4) 등을 교부받아 농협중앙회 대출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원고의 수탁기관인 농협중앙회로부터 주택신용보증서를 발행받은 다음, 2008. 9. 25. 위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중앙회로부터 피고 C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금 4900만 원을 입금받아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증인으로서 2011. 1. 7. 농협중앙회에 위 46,813,05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원고와 피고 B, E, F 및 G 사이: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원고와 피고 D, H 및 I 사이: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D, E, F, G, H 및 I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피고 A과 각자 원고에게 제1의 나.항 기재 돈 중 대위변제금 46,813,0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 발생일 다음날인 2011. 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6. 5.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 C도 다른 피고들과 함께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다른 피고들과 각자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2,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 A이 다른 피고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고 C 소유의 인천 서구 P건물 103동 302호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C, 임차인 피고 A으로 된 2008. 9. 2.자 임대차계약서(갑 제6호증의1)가 작성되었고, 피고 A이 2008. 9. 26. 위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농협자산관리 주식회사가 2008. 9. 29. 피고 C와 면담을 하였다는 등의 조사의견을 기재한 조사보고서(갑 제6호증의 5)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C가 피고 A 등의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반면 증인 Q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C의 동생인 Q가 피고 D의 부탁을 받고서, 피고 C 명의의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농협자산관리 주식회사의 전화 면담 당시 허위의 답변을 하였으며, 보관 중인 피고 C의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하여(피고 C가 자신의 신분증과 도장을 Q에게 맡긴 것만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에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피고 A 등이 위 예금계좌로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금을 입금 받아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D, E, F, G, H 및 I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일염